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(공시송달) 공고 제2026-98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18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공시송달
2. 근 거: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사유
	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1	황0현	01.11.18	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18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	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연속 2회 미제출	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	폐문부재 (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발송 '26.11.03.~'26.01.17.)

4. 공고기간: 2026.011.18. ~ 2026.12.02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희선(Tel. 031-8024-983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